

2019년도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용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2. .  
서울특별시

##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용자계획 공고

### 1. 용자지원 규모 : 총 15억원

### 2. 용자대상 및 조건

○ 용자대상 :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·가공업 및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 허가(신고)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

#### ○ 용자 및 상환조건

용자종류		대상	용자한도액	용자이율	상환조건
일반 용자	시설개선 자금	일반, 휴게, 제과점, 위탁급식영업	1억원	연리 2%	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
		식품제조업소	8억원	연리 2%	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
		어린이보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	3천만원	연리 1%	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
		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	2천만원	연리 1%	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
	육성자금	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	1억원	연리 2%	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
특별 용자	시설개선 자금	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	8억원	연리 1%	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
	육성자금	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지정업소	5천만원	연리 1%	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

※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% 이내로 함

※ 제외대상

- 단란주점, 유흥주점,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제외(단, 화장실 개선은 가능)
-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
-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(업소수와 무관)

○ 사용용도

- 시설개선자금 :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 등 구입 설치
- 육성자금 : 영업장 시설개선 및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

**3. 융자 취급은행 :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기업은행 각 영업점  
신한은행, 국민은행, 농협 영업점(3월중 확대)**

**4. 융자신청 :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**

- 신청기간 : 연중(자금 소진 시까지)
- 구비서류 :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이행확약서  
※ 자치구 위생(관련)과에 비치되어 있음

**5. 융자방법 :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**

- ※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로 신용대출 가능

**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클센터(☎12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**